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0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9.

발 의 자:김은혜·강기윤·배준영

김용판・추경호・이태규

정운천 · 윤창현 · 송언석

최형두 · 조해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

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제6항). 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3조제6항 중 "1년"을 "6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	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
해제) ① ~ ⑤ (생 략)	해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<u>1년</u> 마다	⑥ <u>6개월</u>
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	
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	
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	
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	
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	
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	
다.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	
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	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	
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	
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	
다.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